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3호
2024. 6. 3.(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31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3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2
제463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제463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
제4635호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제463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제463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제463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제463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7
제464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40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1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을 “(차량의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규모·배정대상 및”을 “용도, 규모, 배정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 업무용 승용차량”을 “특수업무용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차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③ 각 기관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의 경우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를 “규정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대한 승인이전” 을 “대하여 시장이 승인하기 전”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경우,” 를 “ 경우.” 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경우,” 를 “ 경우.” 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시의” 를 “서울특별시의” 로, “필요하다고” 를 “특히 필요하다고” 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를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등록 말소·등록” 을 “등록·말소등록” 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 를 “서울특별시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원과 차량유지관리” 를 “직원 및 차량유지 관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9

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공용차량임” 을 “공무용차량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퇴근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을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에게 배차된 차량” 을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4. 시장이 직무상 출·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6조 중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 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영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영기준
승 용 자동차 (전 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의회회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승 용 자동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립대학교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승 용 자동차 (일반업무용)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최단운영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 합 자동차	대형승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영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중형승합차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영연한 7년 이상)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 전용 및 의전용으로 쓰이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화 물 자동차	대형화물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 (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특 수 자동차	이동수리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청소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고소작업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소방펌프차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단운행연한(「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 경과
	소방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 조사차		
	조명배연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재난현장 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3]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다목적 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	·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	·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	· 이동수리차 · 청소차 · 급수 및 살수차 · 트랙트랙터 · 고소작업차 · 구급차 · 진료차 · 렉카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 트레일러 · 점검 · 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라 9 라 10
	· 소방차 - 소방펌프차 - 소방물탱크차 - 무인방수차 - 소방화학차 - 화생방 대응차 - 소방고가차 - 소형사다리차 - 재난지휘차 - 구조차 - 구급차 - 화재조사차 - 조명배연차 - 재난현장 지원차 - 행정 및 교육지원차	라 11 라 11-1 라 11-2 라 11-3 라 11-4 라 11-5 라 11-6 라 11-7 라 11-8 라 11-9 라 11-10 라 11-11 라 11-12 라 11-13 라 11-14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1」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다1 - 3

「예시2」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가2 - 1

[별지 제9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공무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 (서울특별시)

1. 공무용차량 정수 현황

기관명	합계	전용 · 의전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2. 공무용차량 보유 현황

기관명	구분	합계	전용 · 의전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합계							
	구매							
	임차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3. 전용차량 보유 현황

번호	기관명	배정대상	차명	배기량	구입/임차	구입/임차 일자

4. 공무원차량 구입 및 처분 현황(20〇〇 년)

기관명	합계		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구매												
	임차												
	처분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규칙상의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개정(제명, 제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제4조)

다. 전용차량 교체 및 용도변경 조건 개선(제4조, 제8조)

라. 공무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정기 검사 관련 규정 신설(제11조의2, 제14조)

마. 공무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누리집 공개 규정 신설(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바. 출·퇴근 허용을 특정 공무용차량(전용차량 포함)에서 해당 직무 수행자로 변경 및 허용 대상자 추가(제1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9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9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8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 한시임기제	가급/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삭 제)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3)

- 일부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중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경우’로 개선
-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 포함)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4.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5.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5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를 “영 제21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각각 “통보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정한다”를 “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서”를 “정할 것.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조성비”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한정하며 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선정 시”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거사업기획관이 되고”를 “주택공급기획관이 맡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회의개최일 3일”을 “회의 개최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한 경우”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 청 내 역	신청지역	대표 위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	총 소유자수	명			
		동의자수	명	동의율	%	
기 본 사 항	상위계획	○○구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구역면적 등	정비구역 면적·세대수 등의 적법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노 후 도	노후도 비율의 적합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구역명)	

※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

[별지 제1호의6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구역면적	(m ²)
----------------	-------------	------	-------------------

상기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유 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			
	건축물	()			동 수
		소 재 지 (허가유무)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 유 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m ²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① 추진 위원 회 구 성 동 의		② 조 합 직 접 설 립 동 의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		()	
		↳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 여부 체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 견을 조사·확인하는 사항임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구역 또는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나 조 합 시행방식이 아닌 구역은 동의/반대 기재 불필요)			
		※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② 추진시 생략)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 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참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 조합직접설립 동의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미달될 경우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 업이 추진됨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 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을 신설함(제2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6서식)
- 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사전의견조사 형식을 개선함(별지 제7호서식)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면적’의 의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함(제20조제2항)
- 라.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제18조제5항, 제27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4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왕복 통학 교통비 - 산출기준 : 서울시 간·지선 버스 청소년 요금(교통카드 기준) × 2회(1일) × 20일 × 12개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 지원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3년 8월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 오름에 따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중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기준 개정(별표 제1호 가목)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5호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의 국악·전통예술 등”을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등”을 “시장”으로,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호선하여 정한”을 “호선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 7일전”을 “회의 개최 15일 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악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고,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조, 제3조, 제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호서식의” 를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계받은” 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로, “증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은” 을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으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정 신청서” 를 “지정 신청서” 로 한다.

제14조의4의 제목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서울특별시’ 를 “따른” 으로, “신청 결과 통지” 를 “지정 신청 결과 통지”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청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락처	
주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관인생략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제12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납세액은” 을 “수납세액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 2월 10일” 을 “연도 2월 10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부과한” 을 “부과” 로, “해 2월 11일” 을 “연도 2월 11일” 로 한다.

제15조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가산금” 을 모두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가산금” 을 모두 “납부지연가산세” 라 하고, “가산금계” 를 “납부지연가산세계” 라 한다.

별지 제7호 중 “가산금” 을 모두 “납부지연가산세” 라 하고, “증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병) 중 “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하고, 별지 제9호서식(갑) 중 “30만원” 을 “45만원” 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가산금” 을 “납부지연가산세” 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증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제9조 및 제15조,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할인한다.

가. 전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요금 1회당 할인액 : 20,000원 이하 200원, 20,000원 초과 시 1 퍼센트(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할인액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 시 3,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2026. 12.

31. 신청분까지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사람이 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모두 신청 시 상수도요금 3천원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채납분에 대한 전자고지 포함)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첫 가입 할인액 규정 신설(제27조제1항제5호 나목)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2026. 12. 31. 신청분까지 적용하며,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
- 현재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채납분에 대한 전자고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동의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 ~ 18:00) - 야 간 (18:00 ~ 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제14조 관련)

구 분	용 량	가 격
일반쓰레기용	5 ℓ	100원
	10 ℓ	200원
	50 ℓ	1,100원
비 고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 중 5ℓ 및 10ℓ 봉투는 흰색, 50ℓ는 주황색으로 하고, 일반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 재활용쓰레기용 공공용봉투는 투명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을 한강공원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뚝섬 자별레 서울생각마루 3층 운영이 2023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 중 100L 봉투 제작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5호 중 상상마루(뚝섬 자별레(서울생각마루) 3층) 삭제

나.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중 일반쓰레기용 100L란 삭제, 비고란의 100L 문구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를 “법제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

전문위원(4급)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교육전문위원실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축적한 내부경력직이 총괄하도록 하며, 정책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안정적 운영·교섭단체에 대한 효과적 지원 등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에서 지정 해제하고, 정책지원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함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